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 근로자대표 등의  
참여 보장 등>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487호)

2025.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                       |   |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                 |   |
|-----------------|---|
| III. 검토의견 ..... | 4 |
|-----------------|---|

|                                            |   |
|--------------------------------------------|---|
| 1.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 근로자대표 등 의 참여 보장 등 .... | 4 |
|--------------------------------------------|---|

## I. 제안경위

2025년 8월 28일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재해방지대책을 세우는 제도로 주요 국가들에서는 사업장 안전보건에 있어 주요대책으로 자리잡았음. 하지만 우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 제도가 도입·의무화되었지만 이를 실시하지 않거나, 거짓 실시 또는 주요 절차나 의무를 누락하거나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어 위험성평가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이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는 한편, 노동자의 참여, 위험성평가 결과의 작업자 공유, 위험성평가 시 전 교육 등 주요 절차나 의무를 누락하였을 경우에도 처벌하고,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하여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수단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정노동을 유해 위험요인 중 하나로 확장하기 위해 고객응대를

위험 열거 대상에 포함시킴(안 제36조제1항).

나. 위험성평가의 전 과정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를 의무화함(안 제36조제2항).

다.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요구하면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주체, 대상,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함(안 제36조제3항 신설).

라.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들이 파악하도록 고지·게시하도록 하며, 중대재해 가능성이 있는 작업의 경우 상시 고지하도록 함(안 제36조제4항 신설).

마.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6조제5항).

바. 고용노동부가 위험성평가의 이행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36조제6항 신설).

사.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미 실시하거나 조치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키지 않을 경우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1조제1호).

아.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작업장 근로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2조).

자.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 및 조치사항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함(안 제175조제6항제2호의2 신설).

### Ⅲ. 검토의견

#### 1.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 근로자대표 등의 참여 보장 등

#####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고객응대를 유해·위험요인 열거 대상에 포함시키고, 위험성평가 정의를 명시하며, 사업주로 하여금 ①위험성평가의 전 과정에 근로자뿐 아니라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근로자등’ 라 함)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하면서 해당 참여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며, ②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고, ③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 등 위험성평가 실시의 주요 결과를 근로자에게 게시하거나 주지시켜야 하며, ④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험성평가 결과 이행여부의 정기점검 의무를 부과하며,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위험성평가 결과 조치사항 이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험성평가 전과정에 근로자등을 참여시킬 의무, 위험성평가 실시 필요사항에 관한 설명회 개최 의무, 위험성평가 결과의 게시·근로자 주지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위험성평가 결과 및 조치사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171조 등)

[ 표 ]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br>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br>-----<br>----- <u>분진, 고객 응대</u> -----<br>-----<br>-----<br>----- <u>평가(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u> -----<br>-----<br>-----<br>-----<br>-----<br>-----.       |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후단 신설>                                                                                                                                                                           | ② ----- <u>위험성평가</u> -----<br>-----<br>----- <u>따라 위험성평가의 전 과정에</u> -----<br>----- <u>근로자,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u> -----<br>----- <u>.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u> ----- |
| <신설>                                                                                                                                                                                                                                                 | ③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                                                                                                                                           |

<신 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전보건위원회가 요구하면 주체, 대상, 시기, 절차, 방법 등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이 때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
2. 제1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3. 제1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4. 제3호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⑤-----위험성평가-----  
-----  
-----보존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9조제1항·제2항, 제89조제1항, 제90조제2항·제3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2항 또는 제138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을 위반한 자
2. ~ 4. (생략)

제172조(벌칙)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5조(과태료) ① ~ 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의 결과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⑦ 위험성평가-----  
-----  
-----.

제171조(벌칙) -----  
-----  
-----.

1. 제36조제1항·제2항, 제69조제1항-----  
-----  
-----  
-----
2. ~ 4. (현행과 같음)

제172조(벌칙) 제36조제3항·제4항,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  
-----  
-----.

제175조(과태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1. ~ 2. (현행과 같음)

|                                                     |                                                                                                                              |
|-----------------------------------------------------|------------------------------------------------------------------------------------------------------------------------------|
| <u>&lt;신 설&gt;</u><br><br>3. ~ 18. (생 략)<br>⑦ (생 략) | 2의2.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위험<br><u>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보존</u><br><u>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u><br><u>자</u><br>3. ~ 18. (현행과 같음)<br>⑦ (현행과 같음) |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서 사업주로 하여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작업장에 잠재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유해·위험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를 파악하도록 하며,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여 위험작업에 노출되고 위험통제를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스스로 위험성을 평가해야 하는 ‘자주관리원칙’을 구현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과정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현행법에는 없어 실제 현장에서는 위험성평가의 도입 취지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하는 자기예방규율’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판

매사원, 외식산업 종사자, 콜센터 상담원 등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에 노출되기 쉬운 근로환경에 처해 있는 서비스 직종 근로자의 우울증, 수면장애, 근골격계 질환 등의 건강장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 응대’가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개정안은 위험성평가의 정의를 명시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위험성평가의 전 과정에 근로자뿐 아니라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도 의무화하여 위험성평가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도록 하며,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를 의무화하고, 위험성평가 주요 결과를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하는 등의 필수적 절차를 규정하여 위험성평가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도를 제고할 뿐 아니라, 위험성평가의 실시 의무나 필수적 절차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위험성평가의 이행력과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개정안은 제36조제1항부터 4항까지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 한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위험성평가 실시와 그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 의무, 필요 시 추가 조치(안 제36조제1항)” 또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안 제36조제4

항)” 알리는 것이라는 광범위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내용의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수범자인 사업주가 법률만 보아도 처벌 대상행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대표 등이 요구하기만 하면 개최 필요성 등의 요건이나 횟수에 관계 없이 설명회 실시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면서 해당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적절하면서도 최종적인 수단인지,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제재수단은 없는지 등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취지의 사업주 의무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정도를 고려한<sup>1)</sup> 검토

1)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 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안전보건진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제47조에

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는 것을 “위험성평가”로 정의하고 있으나, 위험 수준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 이행까지 포함하여 위험성평가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여타 안전·보건조치와 같이 ‘근로자대표가 요구 시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필요가 있으며, 위험성평가 참여 시간의 근로시간으로 간주 규정은 현제도 산안법상 참여 의무가 있는 제도 참여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하고, 지방관서에서 소사업장(약 300만개)의 다양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평가 관련 서류를 취합·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고위험사업장 중심으로 현장 감독을 확대하여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벌칙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위험성평가 미 실시 및 필수 절차 누락에 대한 벌칙 조항이 도입되면, 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점검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별도 규정이

---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4.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 제1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제5항·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제2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제3항·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4. 제47조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불필요하고, 신속 집행 가능성, 제재 조항 도입 목적, 법체계적 균형 등을 고려하여 형벌(벌금) 보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
|--------------|
| 문 의 처        |
| 02)6788-5545 |